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 상향(안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카목·과목)

다.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함(안 별표5 제1호다목1)~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pheo2@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1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한성기술(한창현) ② (주)태조엔지니어링(한명식)

나. 전화번호 : ① 02-2261-0436 ② 02-2142-9200

2. 명칭 : H pile과 Hat sheet pile이 결합된 차수성 흙막이 가시설 벽체공법(H.C.S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막이공

<기술의 요지>

지하 굴착시 배면 지반이 토압에 의하여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지하수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전 지중에 설치하는 H pile과 Hat sheet pile을 연결재로 결합한 차수성 흙막이 가시설 벽체공법

<범위>

H pile과 Hat sheet pile을 연속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연결재 제작 및 H pile에 연결재를 부착하여 Hat sheet pile과 결합된 차수성 흙막이 가시설 벽체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1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파일웍스(백규호) ② 롯데건설(주)(하석주)

③ 대림건설(주)(조남창)

나. 전화번호 : ① 02-402-1515 ② 02-3480-9114 ③ 032-518-3535

2. 명칭 : 풀림방지 볼트로 말뚝에 고정된 원형링 형상의 조인트 상·하판을 수평편으로 연결하는 PHC말뚝 이음공법(IB-조인트)